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세종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통합 모집 수정공고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  
**세종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통합 모집 수정공고**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은 세종시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기업 성장과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2026년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6. 8.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6년 세종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 (사업목적)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고용유지
- (사업기간) 2026. 2. 1. ~ 12. 31.
- (사업대상)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코드를 보유한 세종시 소재 기업
- (지원규모)

사업유형	세부 사업명	인원	사업내용
고용 장려금	산업수요 연계 핵심인력 확보·정착 촉진 프로젝트	3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촉진 장려금(사업주장려금) →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li> </ul>
고용 환경개선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확대 프로젝트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환경 개선 지원</li> <li>① 가숙사 임차비 지원 → 30만원 × 6개월 = 180만원</li> </ul>
		10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고용환경개선 컨설팅 → 50만원 × 4회 = 200만원</li> </ul>
		5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고용환경 시설개선 → 최대 800만원</li> <li>※ 수혜기업 자부담 20% 이상</li> </ul>

## 2

## 신청시 유의사항

- (필수) 프로젝트별로 공고문을 확인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맞는 붙임의 작성서식으로 사업신청서 및 서류 제출
- 기업의 지원대상(소재부품장비·미래모빌리티) 산업코드는 붙임의 **참고 2**에서 확인

※ 산업분류코드 확인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고용보험 업종 코드 확인 및 공장등록증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 등으로 확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는 기준은 사업장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로 규정

- 신청서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에 따라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타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유사 사업 사전 확인 후 신청 必
-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업은 2026년도 일자리창출 실적 확인 및 성과 지표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채용 확인서, 4대보험 가입명부 등)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전 교육과정) 본 사업의 모든 수혜자는 지원금 지급 이전에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
- 각 사업별 수행기관 연락처

구분	연락처
산업수요 연계 핵심인력 확보·정책 추진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 044-251-3265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확대	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 070-7780-2439

**고용촉진 장려금**

□ **지원내용**

- '26년 2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된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에게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규모) 총 36개사 / 기업당 2명 지원
- (지원금액) 월 100만원 × 6개월 지원(1인 최대 600만원)
- (지원방식) 선정 대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한 이후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검토 후 기업에게 지급
- (신청기간) 공고 후 마감 시까지(선착순)
- (수행기관)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지원조건**

- (지원자격) 아래 요건(기업·근로자)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 분	내 용
① 기업요건	· 세종특별자치시 내 입주한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모빌리티 기업
② 근로자요건	· '26.02.01.(토)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 (정규직 요건)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나이)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 최저임금 110% 이상 ※ 최저임금 100~109%의 정규직 인 경우, 1개월 당 8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최저임금 기준 (2026년) 】**

- (최저임금 100%) 공제 전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 (월급)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 (최저임금 110%) 공제 전 (시급) 11,352원 (일급) 90,816원 (월급) 2,372,568원(주 40시간 기준)
- ※ 기본급, 기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
- ※ 초과근무수당 등은 제외

## 2 신청방법

### □ 사업 신청방법

#### ○ (공고 및 접수)

- (고용촉진장려금) 공고 후 접수인원 마감시까지 선착순

####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이메일 : [hjseon@sjepa.or.kr](mailto:hjseon@sjepa.or.kr)

- 아래의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연락을 통해 접수 여부 확인 필수

#### ○ (제출서류) 작성서식 및 증빙서류 각 1부

구분	작성서식	증빙서류
사업 신청서류	① (공통서식1)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② (공통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서식1) 정규직 [지원대상 근로자] 명단 확인서 ④ (서식6) 고용촉진 장려금 참여기업·참여자 자격 확인 및 동의서	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②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③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신청일 직전 월말 발급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대상산업 확인 서류 (산업분류코드 확인) ⑥ 근로계약서 사본(입사일 명시)

※ 모든 서류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문 의 처

○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 044-251-3265

### □ 지원금[사업주·재직자] 신청방법

○ (신청시기) 선정기업의 참여기업 담당자 또는 참여 근로자가 월 단위 사후신청

※ 상세사항은 선정기업 대상으로 담당자가 추후 안내

- 기업이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확인 후, 지원기간이 경과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 '26년 12월 예산 마감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 안에만 지원됨

(예시) '26년 9월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6년 9월~12월이 사업 기간으로 4개월 지원됨.

### ○ (지원금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고용촉진 장려금	① (서식3)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지원기간 말일 이후 기준) ③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또는 송금확인증 등) ④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⑤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교육 수수료증 1부(근로자 본인/ 최초 1회 제출)

## 프로젝트 2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확대

### 1 기숙사 임차비 지원

#### □ 지원내용

- 세종시 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규모) 40명 ※ 기업당 최대 5명
  - \* '26.02.01. 이후 정규직 채용(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 정규직 채용(전환) 근로자 기숙사 거주 의무 없음
  - \* 기숙사 거주자 전입신고 의무 없음
- (지원금액) 월 최대 30만원 한도(임차료의 80% 이내)
  - ※ 최대 6개월분 지급(총 180만원 이내)
  - ※ 보증금 및 관리비, 임차비 차액은 기업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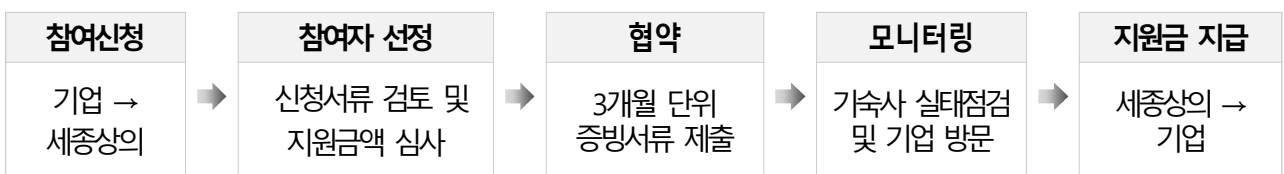
- (지원방식) 대상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한 기숙사의 매월 임차료를 선지급 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 (지원기간) 2026. 02. 01. ~ 12. 31.
- (신청기간) 공고 후 마감시까지
- (수행기관) 세종상공회의소

## □ 지원조건

- (지원자격) 아래 요건(기업·근로자·기숙사)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분	내용
① 기업요건	· 세종특별자치시 내 입주한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모빌리티 기업
② 근로자요건	· 해당 산업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b>'26.02.01.(토)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b> 최소 1인 포함 ※ 정규직 채용(전환) 근로자 기숙사 거주 의무 없음 ※ 기숙사 거주자 전입신고 의무 없음 ※ (정규직 요건)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③ 기숙사요건	· 사업주가 세종시 내 소재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산업농공단지 인근에서 공동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단독주택 허용 · 임차료 일부(20% 이상)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1개월 이내 대체하여야 해당 기숙사 지원 자격 유지 · 기업이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 활용 가능

## □ 지원절차



## □ 사업 신청방법

- (접수방법) 이메일(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이메일 : sejongcci02@naver.com
  - 아래의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연락을 통해 접수 여부 확인 필수

○ (제출서류) 작성 서식 및 증빙서류 각 1부

구분	작성 서식	증빙서류
사업 신청 서류	① (서식1)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확대 프로젝트 (기숙사 임차비) 참여신청서	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② (서식2) 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	②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관리비 별도 표기
	③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④ (서식4)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확대 프로젝트 (기숙사 임차비) 대상자 명부	④ 근로계약서 사본(입사일 명시)
	⑤ (서식6)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확대 프로젝트 신청기업 협약서	⑤ 대상 산업 기업 확인 서류
	⑥ (서식7)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확대 프로젝트 거주사실확인서(전입신고 안되어 있는 경우)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모든 서류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주 사실 확인서 제출

※ 주거비가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된 경우, 근로계약서 내 주거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비 항목을 별도로 표기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보완)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회차부터 지원을 중단(지원금 부지급)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10영업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 시기 및 방법) 참여기업은 지원금 지급 산정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이내 신청

○ (지원금 신청)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에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임차비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신청

○ 참여기업은 '근로자 또는 기숙사 변경(공실) 사실 발생 시' 해당 제출서류 구비 후 상시 제출하여야 한다.

- 주거비가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된 경우, 근로계약서 내 주거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비 항목을 별도로 표기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제출
- 신규근로자 중도 퇴사 발생 시 1개월 이내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여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회차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지원금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서식4)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확대 프로젝트 (기숙사 임차비) 대상자 명부</li> <li>② 4대 보험 가입자 명부</li> <li>③ 월세 납입 증빙자료(3개월치)</li> <li>④ (서식8)기숙사별 내·외부 사진</li> <li>⑤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되어 있는 경우)</li> <li>⑥ 지원금 수령 계좌사본</li> <li>⑦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교육 수료증 1부(근로자 / 최초 1회 제출)</li> </ul>	3개월 단위 신청
근로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서식5) 근로자 변경(공실) 신청서</li> <li>② (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li> <li>③ 고용보험 상실신고서(퇴사자 발생시)</li> <li>④ (서식6)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확대 프로젝트 신청기업 협약서</li> <li>⑤ (서식7)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확대 프로젝트 거주사실확인서(전입신고 안되어 있는 경우)</li> <li>⑥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되어 있는 경우)</li> </ul>	해당 근로자만
기숙사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li> <li>② 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li> </ul>	해당 기숙사만

## □ 사업운영

- 사업주의 월세 납부 서류 및 근로자의 근로확인서류(고용보험 등) 등을 확인하고 월세 비용을 3개월 단위 사후 정산
- 기숙사의 공실 발생 시 사업주 부담
  - ※ 단, 월 15일 이상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 해당 월의 기숙사 비용 지원

## □ 문 의 처

- 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 070-7780-2439

## 2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및 시설개선

###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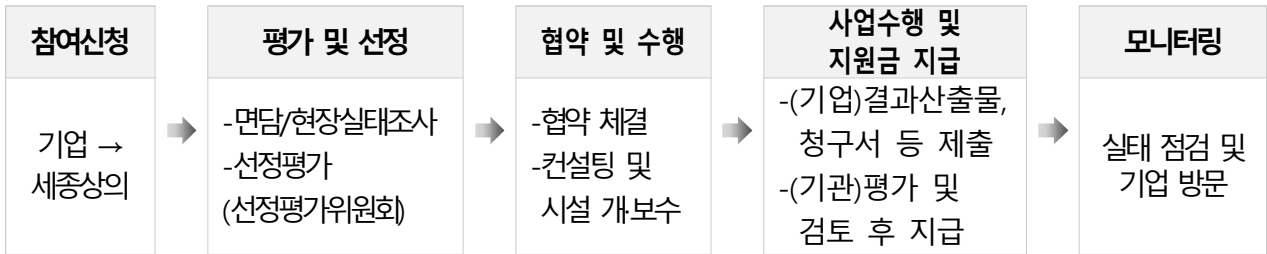
- 세종지역 소재·부품·장비·미래모빌리티 산업 분야 기업 중 신규 인력을 채용예정중인 기업으로,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시설 개·보수 연계 최대 1,000만원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10개사·시설개선 5개사
- (지원금액)
  - (외부 전문가 컨설팅) 4회 이내 / 회당 50만원
  - (작업환경·안전·편의시설 등 개·보수) 최대 800만원
    - ※ 기업 자부담 20% 이상 필수
- (지원방식) 고용환경시설 컨설팅 보고서 및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후 신청
- (신청기간) 공고 후 마감 시까지(선착순)
  - ※ 사업기간(2026년도)내에 시설 개·보수 완료 필수
- (수행기관) 세종상공회의소

### □ 지원조건

- (지원자격) 아래 요건(기업)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분	내용
기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내 본점,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li> <li>· (기업규모) 고용보험 가입 대상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기업</li> </ul>
선정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창출계획)</li> <li>- 본 사업기간 내 신규 채용 계획이 1명 이상 있는 기업</li> <li>· (환경개선 시급성)</li> <li>-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고용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기업</li> </ul>

## □ 지원절차



## □ 사업 신청방법

- (접수방법) 이메일(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이메일 : sejongcci02@naver.com
  - 아래의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연락을 통해 접수 여부 확인 필수
- (제출서류) 작성서식 및 증빙서류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시	① (공통서식1) 사업 참여 신청서(사업주) ② (참고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③ (서식9) 기업 소개 및 상세계획서 ④ (서식13) 기업 참여 자격 확인서 및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⑧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신청일 직전 월말 발급본) ⑨ 대상 산업 확인 서류 (고용보험 업종코드 확인 등) ⑩ 참여자(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구분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시	① (서식10)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서식11) 고용환경개선 컨설팅 결과보고서 ③ (서식12) 고용환경개선 이행확인서 ④ 기업명의 통장 사본 ⑤ 지출 증빙자료 ⑥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교육 수수료증 1부(대표자 또는 소속 근로자/ 최초 1회 제출)

※ 협약체결 : 프로그램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은 세종상공회의소와 2자협약을 체결

##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급방식)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
- (정산원칙)
  - 컨설팅이 실제로 수행된 횟수에 대해서만 지급
  - 결과 산출물이 미비할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 (현장점검) 수행기관 담당자는 컨설팅 기간 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컨설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실시

##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에 따라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타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유사사업 사전 확인 후 신청 必

## □ 문 의 처

- 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 070-7780-2439

## 참고1 지원제외 기업 및 근로자

### □ 지원제외 기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최근년도에 공표 중인 기업
  -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 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따라 부정수급 처분 등을 받고 참여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주
- ④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⑤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⑥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전체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기업
- ⑦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자치단체장이 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⑧ 장려금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

### 감원방지 규정

- 감원방지 대상 : 장려금 지원대상자
- 감원방지 기간 :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
- 위반시 제재 : 장려금 지원대상 기간 중 참여기업에서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 최초 발생 월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함
  - 인위적 감원 발생 이전에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다만,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라도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인위적 감원 발생 월부터 이후 기간에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함
- 지원금 지원 제외 :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인위적 감원 최초 발생일 이후 다른 지원 대상자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려금 지원이 제한되며, 인위적 감원 최초 발생일 이전 채용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 가능

## □ 지원제외 근로자

-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 채용 시점뿐만 아니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 혼인 등으로 법률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제한
  - ②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 \* 예) 고용창출장려금,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③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④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하는 경우 제외
  - ⑤ 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채용일 이전 1년에 한함) - 고용촉진장려금만 해당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⑦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⑧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⑩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 등 간접 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⑪ 근속의 중단이 있는 자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노조 전임자, 기타 등 근속 중단 시 모두 해당 - 재직자 장려금만 해당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9① 및 별지 제22호의 (단 :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가지 사유만 예외적으로 근속 중단이 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

**참고2****'26년 지원대상 산업코드 분류표****1 소재부품장비 산업**

산업코드	산업명
13101	면 방적업
13102	모 방적업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9	특수 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300	편조원단 제조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7103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06	위생용 원지 제조업
1710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1	수소 제조업
20122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3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91	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산업코드	산업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1301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22110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91	고무패킹류 제조업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111	판유리 제조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4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산업코드	산업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5942	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산업코드	산업명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치과기공물 제조업
27193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27194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5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2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산업코드	산업명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28209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4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5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7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1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2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29193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산업코드	산업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2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부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부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부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부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부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1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2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 미래모빌리티 산업

산업코드	산업분류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산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